

대한민국 재외선거 - 이렇게 합니다.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제공일자 2010. 6. 30.

총 1 면

www.nec.go.kr

☎82-2-503-0648

FAX82-2-504-5350
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.

- ◎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.

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(이하 '선거운동기간'이라 함)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.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.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※ 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기간

구 분	후 보 자 등 록 기 간	선 거 운 동 기 간
제 19 대 국회의원선거 ('12. 4.11)	2012. 3. 27 ~ 3. 28	2012. 3. 29 ~ 4. 10
제 18 대 대통령선거 ('12.12.19)	2012. 11. 25 ~ 11. 26	2012. 11. 27 ~ 12. 18

<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(www.nec.go.kr) >